



Contents

의정 회 고

- ▶ 반갑습니다, 의원님!! – 허영일 前 부의장 인터뷰 (5)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연간 100조원 심의’ 지방의회 독립성 · 전문성 강화 필요(공통) (23)
- ▶ 단체장 인사전횡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공통) (26)
- ▶ 〈인터뷰〉 취임1주년 김기영 충남도의회의회장(충남도의회) (29)
- ▶ 사립 중등교원 선발시 ‘교육청 위탁 조례안’ 추진(대전광역시의회) (31)
- ▶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경기도의회) (33)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36)
- ▶ 대구광역시 대구 · 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38)
- ▶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40)
- ▶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42)
- ▶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46)
- ▶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 · 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48)
- ▶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50)
- ▶ 수원시 농업 · 농촌 · 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 ▶ 전라남도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53)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공직선거법 (57)
- ▶ 국민연금법 (60)
-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61)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3)
- ▶ 진로교육법 (65)
- ▶ 가축전염병 예방법 (67)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70)
- ▶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 (72)
- ▶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판례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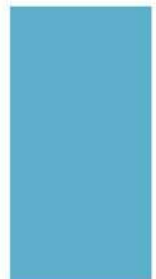




기획 시리즈

의정 회 고(5)

「반갑습니다, 의원님!! - 허영일 전 부의장」



반갑습니다, 의원님 !!



- ▶ 단국대학교 졸업
- ▶ 서산시 고북면장
- ▶ 서산시 해미면장
- ▶ 제5대 충청남도 의회의원
- ▶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
-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 제6대 충청남도 의회의원
- ▶ 충남도의회 부의장
- ▶ 한나라당 서산·태안 당협위원장
- ▶ 현)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충청남도의회 허영일 前 부의장 (5,6대 도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야...

80세를 한자로 산수(傘壽)라고 한다. 산수는 산(傘)자의 약자가 팔(八)을 위에 쓰고 십(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했다. 충남도의회 제6대 하반기 허영일 부의장은 내년이면 이 산수가 된다.

필자는 중동호흡기장애 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던 6월 초순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許부의장을 찾아 나섰다. 許부의장은 도의회 제5대부터 6대까지 2선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 2월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회장으로 당선된 許부회장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설을 비롯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노인복지 향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許부의장은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노인들이 건강해야 우리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새하얀 와이셔츠에 핑크빛 넥타이를 멘, 許부의장의 모습이 남다른 감각을 자랑한다. 첫인상에서 풍기는 許부회장의 온화하고 포근함은 ‘참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다’는 감탄을 연발케 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일 매일이 기대 된다”는 백발의 노신사는 트로트 가수 정훈이 부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노래가 제격이다.

공직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사회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시대엔 실제로 은퇴하는 중장년층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젊다”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은 후라도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 어려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許부의장은 “충남도 15개 시장 군수 대부분이 야당(새누리당)이며, 거기다 도의원 75%가 야당인 상황에서 분쟁과 갈등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안희정 지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했다. 다만, 충남도가 선배공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금처럼 정보량이 많고, 세상이 복잡할 때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 경륜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개원초기 원 구성에 있어 야당이 의장을 비롯해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다수당의 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기영 의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의정회고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정신문사 설립과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사례를 꼽았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과 관련, 견제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되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는 행정감사와 조사, 예산 심의 등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후배 의원들에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야 한다”면서 “집행부와 끊임없는 대화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산에서 머슴 셋을 거느린 부농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許부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항상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79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내일이 기다려진다”며 현재에 만족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생선배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 요즈음 어떻게 지내나?

현재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2012년 2월 28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나는 당시 서산지회 사무국장을 11년째 하고 있던 박병열 후보를 58표 차로 이겨 2016년 3월 31일까지 제6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공약했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 유치·운영과 전천후 게이트볼장건설(전국대회유치), 마을경로당의 활성화, 시니어클럽 활성화 등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에는 교황이 집전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후 서산지회 회원 120여명과 함께 해미읍성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교황이 집전하는 폐막미사 행사를 서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품격 있게 잘 마치게 되어 서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꼈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서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33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아업 창출이 절실했다. 그래서 서산시로 부터 올해 16억 3934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8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역시 보람으로 생각한다.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굴욕을 견디고 50년대 한국전쟁 그리고 ‘보리 고개’를 힘들게 견디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그래서인지 노인들은 나눔과 베풀음에 인색하다. 이러한 노인의 심정은 노인만이 안다. 그래서 지도자인 내가 베풀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다.

- 노인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



노인회는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다. 다만, 상근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서산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회장에게는 보수가 없고 얼마 정도의 활동비를 회비에서 받는데 이것으로 회원들의 경조사비 충당도 못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비료위탁판매를 하기로 했다. 농협에서 1포에 3750원에 판매하는 유기농비료를 서산시가 16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노인회가 각 마을 경노회장과 협조해 비료를 판매하기로 했다. 1포에 500원의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는데 올해 목표는 우선 20만포로 잡았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기대가 크다.

- 무척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 비결은 ?

서산은 풍수지리상 선녀가 비파를 타는 형상(옥녀 탄금형), 금계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금학 포란형)의 길지에 속하는 주산 옥녀봉의 그늘 아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입지적 조건이 훌륭한 서산에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고 있어 남들보다 건강한 것 같다.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항상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자”를 좌우명으로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일 매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 행복하다.

나이가 들면서 등산 등은 피하면서도 가끔 친구들과 골프를 치려고 필드도 나가고 스크린 골프장에도 간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 가족 관계

현재 서산시 해미읍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는데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

서산군 통계·병사·문화관광 계장, 서산시 고북·해미면장 등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원 2번과 서산시장에 출마해 낙선하면서 3억 6000만원을 빚을 떠안아 이것을 갚느라 유산으로 받은 땅을 처분해 현재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웅색하지 않게 살고 있다.

다만 가진 것이 별로 없다보니 지도자(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로서 술선수범해 나눔과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 정치입문 배경

서산시 고북면사무소에서 면장을 할 때다. 어느 날 주민 한분이 기분 좋게 면사무소를 방문해서는 나갈 때 낙담한 표정으로 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민원인을 만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경작지를 팔았는데 흥성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경작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면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했더니 이 증명서 발급이 폐지 됐다고 한다. 그러자 무슨 행정이 이런가 하고 낙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산업계장을 불러 민원인의 땅이 언제부터 무엇을 심었는지 조사해 경작증명을 대신해 인우증명을 공문서로 세무서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이 민원인은 이 서류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고 감사표지를 보였다.

행정의 기초가 법과 규칙인데 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폐지되어 민원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의원 선거에 도전, 서산시 제2선거구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 초선에 상임위원장과 재선에 부의장을 역임했다. 비결은 ?

전직 공무원 경력을 살려 5대 의회 내무위원과 운영위원장, 6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했다.

물론 나보다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이 높이 평가해 제5대 도의회에서 초선임에도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

또 제6대 도의회 후반기(임기 2년)도 재선에 불과한 나를 동료 의원들이 제2부의장에 추천, 선거에서 내가 19표를 획득해 3선 전용설(13표) 의원을 눌렀다.

의원 개개인은 개성이 몹시 강하다. 또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당시 동료 의원들의 배려로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나는 소통을 통해 개성이 강한 의원들로부터 배려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인이 메난드로스는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 그것은 진심에서 오는 배려다”라고 말했으며, 마더 테레사도 “배려가 있는 말은 짧고 간단한 것이라도, 그 반향(메아리)은 실로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배려는 소통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는 배려가 부족해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귀담아들어야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 소통의 방법에 대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각오를 밝힐 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통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의사소통 행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이 대화이다.



대화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진정한 대화비법은 말하기보다는 바로 ‘듣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소통은,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는 것이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고 귀를 훑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며 하기 쉬운 말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

소통의 한 방편으로써 말할 때 주의점을 루소는 “당신을 좋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취급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5대·6대 의정활동 평가

제5대 지방선거는 여·야 합의에 의한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을 근거로 광역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 4대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통합선거로 실시됐다.

따라서 제5대 지방선거는 모든 영역에서 직선제로 선출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으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시작점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제6대 지방선거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의원은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에서 2인으로 선출했다. 그래서 제5대 지방선거보다 정수가 대폭 축소됐다.

5·6대 충청도의회는 단체장의 견제를 통해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공헌했다. 과거 성장위주의 시기에서는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은 후순위로 처져 있었으나, 현재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병행이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의 경우 임기기간 중의 실적을 위해 주민에 대한 복지 보다는 전시행정 등 성장위주의 정책에 치중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 시정되어 주민들의 선별주

의적·보편주의적 복지가 성장과 적절히 병행, 그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제고됐다.

또한 단체장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방의회의 영역인 예산심의 및 의결은 집행 전에 단체장을 통제하고, 결산승인은 집행 후에 견제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주민대변을 통한 민원해소 정착에 한몫을 했다.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것을 심사해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자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많은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5·6대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곳곳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도민의 편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뜻과 바람을 대신 이루어 냈습니다.



- 2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의 보람

충남도는 전통적인 농업
道이자 공업과 관광 개발
의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나는 도의원으로서 이 기반을 토대로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농촌교육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5~6대 도의회 재임기간 동안 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노선선정,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수도권입지 규제완화 관련 등을 위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를 수 없이 방문했다.

2002년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3개 반(반장 許榮一·朴東允 부의장과 康華燮 꽃박람회특위 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원 홍보단은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20여일간 집중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그래서 2002년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또 다양한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의원 연찬회, 세미나, 해외 연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을 통한 현장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국외 연찬회는 7회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유럽, 아·대양주, 미주 등을 방문해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 운영실태, 각 분야별 자료 수집 및 지방자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밖에도 2001년 7월 김재봉(金載鳳)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상임위원 장단 10명은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도의회 방문단은 이날 오장섭(吳長燮) 장관을 만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배치될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12개 다른 시·도와 지방의회, 시민 단체, 지역기업인 등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막을 수 있었다.

방문단은 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조성, 호남 고속철도 천안 분기(分岐) 노선 확정, 대전~당진고속도로 및 공주~서천 고속도로 건설,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기반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충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언론을 통해 충남도정을 접하고 있다. 특히 도정신문을 보면 충남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정신문사는 제5대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것이어서 매우 애착이 간다.

그런데 요즈음 보니 장족의 발전을 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도정신문에 따르면 충남도는 3농혁신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충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 ‘청풍명월(淸風明月) 골드’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도시민에게 농어촌체험관광 홍보 및 체험객 유치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가보고 싶은 충남’으로 이미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야당(새누리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갈등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고, 시장군수 대부분이 야당인데도 원만히 도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 안희정 지사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다만, 선배 공직자들의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 경륜과 지혜를 도정 발전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처럼 정보량이 많고, 세상이 복잡할 때는 이들의 도움이 도정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안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인의장벽을 허물고 소외 받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다.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우선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큰 꿈이 있는 안 지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 지사의 측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 충남도의회 의정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출범 1주년을 맞은 제10대 충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 도민을 섬기며 귀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선배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5분 정책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활발히 함으로써 도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와 관련, 의회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발 빠른 현장 의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 도민 품에 녹아든 것이다.

원 구성 파행부터 천안지역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문제를 이른 시일 내 슬기롭게 대처했고, 매듭지은 것은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김기영 의장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 당진·평택항 관할권 분쟁에 대한 견해는

지난 10여 년간 평온하게 관리·운영해 온 땅을 최근 행자부가 이땅의 70%를 평택에 넘겨준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땅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함에 따라 신평면 매산리 소재 21필지 159만 8266㎡에 대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할로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법 개정으로 현재에서 인정한 행정관습법 상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결정한 것은 국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행정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지적등록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도의회도 힘을 실어 줘야한다. 민원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앞에서 도의원들이 연이어 1인 시위를 벌이고, 22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행자부의 결정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후배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선 견제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되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는 행정감사와 조사, 예산 심의 등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와 끊임없는 대화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특히 행정감사와 조사에서 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들춰내려는 잘못이 사실인지확인 해야 한다.

또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펴야 하고 이치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드럽고 조용하며 시끄럽게 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내지 않아야 한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신령스런 용은 맛있는 먹이를 탐내지 않고 (神龍不貪香餌) 기품 있는 봉황은 새장이 예쁘다고 들어가지 않는다(彩鳳不入雕籠). 이는 품격을 지키라는 말이다.

용과 봉황이 품격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잡어(雜魚)와 잡새가 된다. 또한 미꾸라지 주제에 용인 줄 알고 주접을 떠는 자들과, 참새 주제에 봉황인줄 알고 설치는 자들이 있으면 사회가 혼란하다.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품격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힘들어도 품격을 지켜야만 사회가 혼란하지 않다.

의원들이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도정발전에 힘을 보테라는 말이다.

· 후배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

충남도의 청렴도가 쏠
찌라는 보도를 접하고
는 공직선배로서 매우
부끄러웠다. 물론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청렴도가 낮아진 것으
로 확인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업체
로부터 잘 봐달라는
등의 업무관련 청탁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금전으로 공직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이를 과
감히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렴은 벼슬살이의 근본이며 검소는 몸가짐의 바탕이다. 다산의 ‘목민심서’
에는 청렴과 관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 때 하수(何須)는 안한(安漢) 현령이 됐다.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
파(巴)지방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수는 아전을 보내어 백성들의 토란을 캐
먹고 그 자리에다 실로 돈을 매달아 값을 치르고 갔다.

또 제나라 때 유희위(劉懷慰)가 제군(齊郡) 태수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햅쌀 10말을 보내왔다. 그는 보낸 자에게 보리밥을 꺼내어 보이며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다행히 폐를 끼치지 않아도 좋을 형편이다”라고 말
했다.

아울러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직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첫 대면이 좌우한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공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물으면 ‘불친절’과 ‘권위주의적’이란 단어가 스스럼없이 나온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는 대화하는 모습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 간에 대화하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상하를 막론하고 서로 친절하고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에 조직원들 간의 분위기는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대담·정리 :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연간 100조원 심의’ ...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무늬만 지방자치’ ...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 ...의정활동 자체 평가 60점~90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가 '취임 1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가진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의장들은 한결같이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의원보좌관계 도입과 의회인사권 독립 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좌관계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보다 득이 많다는 시각이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한해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며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와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한해 11조원을 심의하는데,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비용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의회별로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다, 광역의원들이 혼자 지역구를 챙기면서 의정활동에도 전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전체 의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사비를 들여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고, 부산시의회도 시간제 전문보조원 12명을 뽑아 내년 1월부터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의장들은 또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법'에 쫓겨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하나 마음대로 만들기 어렵고, 의회사무처 직원 한명 인사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원에 보좌관 배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위를 통과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광역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묶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것은 의원들의 자질보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고,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지방통제법', '지방자치관리법'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방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와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견제와 감시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장들은 또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들 의회는 대부분 짧게는 2년, 길게는 12년째 의정비를 동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장들은 "의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공약이행 의지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과 경기도의회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80점, 세종시의회 의장은 70점을 줬으나 전남도의회 등 나머지 의장들은 "주민의 몫"이라는 이유로 '셀프 성적표'를 내지 않았다.

전국종합 jr@yna.co.kr



공 통

단체장 인사전횡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확산될 전망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부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명 때마다 빚어지는 측근·보은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시행 지방의회 현황>

지역	내용
전남도의의회	집행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전남개발공사 등 5곳 기관장)
대전시의의회	인사청문회 간담회 운영(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협약, 도덕성 검증위 구성(경기도시공사 등 6곳)
제주도의의회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법에 따라 합법적 실시(부지사 등, 산하기관장 제외)
광주시의회	산하 및 출연기관 인사청문 업무협약(김대중컨벤션센터 등 8곳)
인천시의의회	정무부지사 대상 인사간담특위 구성 운영

10일 지방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의회, 강원도의의회, 울산시의의회 등이 지자체 부단체장 및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전·경기·제주·광주 등 일부 지방의회는 업무협약, 조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등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부분 도입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움직임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가속화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지난 9일 시에 요청했다. 시 산하에는 부산교통공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료원 등 21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임원추천위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명권자인 광역단체장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적절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면 의회가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상호 협조적인 균형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도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8월 윤시철 시의원이 공식적으로 시에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하반기 인사청문회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산업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강원도립대 등 3곳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포진한 청문회특별위(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정착되려면 과제도 많다. 국회가 지자체 인사청문회 실시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률적 불완전성을 없애야 한다. 2012년부터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고 지자체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인터뷰> 취임 1년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 의회와 집행부 공동목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역량 총결집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환황해 경제권’ 부흥의 실마리 찾기

"충남도와 의회가 함께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의 행복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무한한 발전과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의 불씨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환황해 경제권' 부흥의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실화 방안은?

▲ 현재 지방의원에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은 2003년 1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12년째 150만원으로 묶여 있다. 12년간 공무원 보수는 28% 올랐고, 민간기업 임금 상승률은 44.3%에 달한다. 지방의원의 겸직마저 금지된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40명의 도의원이 올바른 견제와 비판,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 때 도민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 허락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 업무가 늘어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 충남도의 40명 의원 모두는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임무 외에도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토론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강진욱 기자 kju@yna.co.kr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사립 중등교원 선발시 “교육청 위탁 조례안” 추진

대전의 한 사립 중등학교에서 교원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대전시의회가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교사선발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

최근 대전의 한 사립 중등학교에서 교원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대전시의회가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교사선발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부의장(교육위원회·새정치연합)은 12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학교의 신뢰추락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등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권고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제 사립 중등학교가 과거와는 달리 시설 등 각종 투자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립학교나 다를 게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사채용 시에도 오해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선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사선발을 위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시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과 사립학교, 학부모, 교사 등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교원 위탁선발 권고 조례안만으로, 기존 사립학교들이 순순히 따라줄지, 밀실 교원선발 관행이 깨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전에서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금품 수수 등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교사 채용 대가로 이 법인에 수 천만 원의 돈을 기부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교사 A씨(35·여)를 구속하는 등 교원채용 비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연제민 기자 yjm981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상반기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광명(새정치·화성4) 의원은 현재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에서 도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행감을 제1차 정례회(매년 6월)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행감의 상반기 이전은 차기년도 본예산안 및 해당연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처리와 행감이 2차 정례회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사무처가 최근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요구 관련 검토보고서’에도 차기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감이 분리될 경우 마무리 추경예산안, 본예산,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과중한 2차 정례회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았다.

행감 지적사항을 해당연도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어 도의회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의원 임기와 행감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했다.

다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사 등과 함께 행감이 진행될 경우의 업무 가중, 연정예산제도 도입 시 행감 기간 변경의 강점요인 약화, 4~5월 행감 준비로 인한 관계공무원 업무부담 등은 약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행감의 상반기 이전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감사) 제2항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으로 변경 시기를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심의안건)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과...’ 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과...’ 로 수정했다.

조 의원은 “검토보고서나 관계공무원 등의 견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행감의 상반기 이전에 상당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며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감 등 주요사안의 효율적 운영과 도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행감 시기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6월3~9일)와 관련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 해당 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확정해 7월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안산·남양주·과천시 등 18곳(2014년 기준)이 제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송용환 기자 syh@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15-05-14 조례 제 5904호

□ 주요목적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제정) 2015-05-20 조례 제 4725호

□ 주요목적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협력을 위한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3조(공동협력 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책사업의 유치
2.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의 유치
3. 국내외 기업 또는 시설의 유치
4.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
6. 기타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장과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장”이라 한다)이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보고) 시장은 달빛동맹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
2. 달빛동맹과 관련한 기금의 조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 공동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2.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각각 15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문화와 경제관련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전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 2015-07-01 조례 제 4532호

□ 주요목적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촌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희농지·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2. 마을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4. 농촌 관광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농업인에 따른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촌마을 활성화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촌마을 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법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고령농업인 업무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언론계·민간단체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4.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15-05-01 조례 제 4901호

□ 주요목적

도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명령(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2.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등(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참여공무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군·구에서 이와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판결등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건의 본안 중 도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교육세 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있는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등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0,000원 이내.
3. 가압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시기 등) 포상금 지급대상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지급시기 및 절차는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자료제출)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도의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표창을 할 수 있다.

5.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6-05 조례 제 3853호

□ 주요목적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 주요내용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희망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제6조(이용요금) 시장·군수는 해당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요금을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6-25 조례 제 1154호

□ 주요목적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 주요내용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노원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2 대구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 1114호

□ 주요목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촉진)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제11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2015-06-30 조례 제 1062호

□ 주요목적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6-05 조례 제 3409호

□ 주요목적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전통 생활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교육운영
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전시 및 행사, 공모전

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5. 전라남도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6-15 조례 제 2065호

□ 주요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

□ 주요내용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레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도로 구간별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로관리 부서의 공무원
2.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3.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공공시설물 등 관리기관의 직원
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간사는 해당도로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 설치·관리방안
2.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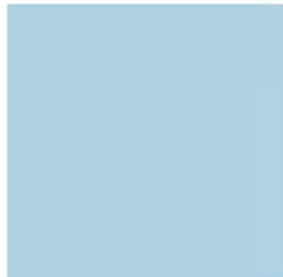
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공직선거법

(법률 제13334호 / 시행일 2015-06-19)

□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제24조의3 신설).

2.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시행일 2015-06-22)

□ 개정이유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46조의3).

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3383호 / 시행일 2015-06-23)

□ 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5호 / 시행일 2015-06-22)

□ 개정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3장제1절에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심사·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5. 진로교육법

(법률 제13336호 / 시행일 2015-12-23)

□ 개정이유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또한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제5조).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제8조).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20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3353호 / 시행일 2015-12-23)

□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소지가 큰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제3조의4 신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예찰·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강화(제4조)

현재 축산 및 수의 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제6조의2 신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함.

라.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제도 보완(제16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에 식용란(食用卵)을 추가함.

마.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제17조)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현재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에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확대함.

바.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제17조의6 신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가축전염병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고, 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종전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 외에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제19조제4항제5호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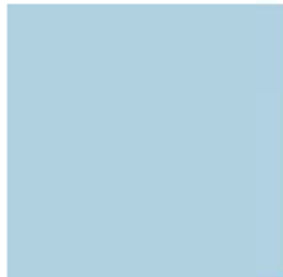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 보상금 감액규정 보완(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신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 미준수 등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축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판시사항】

-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을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

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을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 즉 선거전략,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형사판결의 증명력, 선거비용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8421

【판시사항】

-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신설되기 이전인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이를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조 제3항의 조치를 다한 후원회지정권자를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의 행위 시점이 위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 소

창원지법 2006.4.27. 선고 2006구합86

【판시사항】

- [1]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조례안의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심의·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민들은 조례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지방의회 의장과 권한을 침해당한 지방의회의원 사이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 마지막 날에 예정된 회의가 다수의 사람들이 의회 건물을 점거하고 회의에 출석하려던 지방의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개의되지 못하였고, 의장은 개회가 절대적으로 방해받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위와 같이 부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조례안이 가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이 4인 지역구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2인 지역구제와 4인 지역구제는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어떤 지역구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5년 7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1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